
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1. 제안경위</p> <p>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나. 의안번호 : 제394호 다. 제출일자 : 1999년 10월 4일 라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9일</p> <p>2. 제안이유</p> <p>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의 개정('99.1.29)으로 수입인지 판매인 「지정제도」가 「계약제도」로 전환됨에 따라, 우리 시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를 「계약제도」로 전환하려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가. 서울특별시에 납부하는 수수료·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서 납부하도록 하되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토록 함.(안 제3조)</p> <p>나. 수입증지판매인 「지정제도」를 「계약제도」로 전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이 되고자 하는자는 시장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, 판매인의 요건, 의무,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.(안 제4조)</p> <p>다.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판매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액의 100분의 3으로 함.(안 제5조)</p> <p>4. 참고사항</p> <p>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15조</p> <p>*제15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</p> <p>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.</p> <p>5. 검토의견</p> <p>□ 서울특별시수입증지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.</p> <p>□ 먼저, 동 개정조례안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○ 동 개정조례안은 사용료, 수수료, 과태료 등을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함으로써 수입증지의 발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1962년 조례 제248호로 전문 개정된 후 2 차에 걸쳐 개정되어 운영하여 왔으나, '99.1.29 개정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에서 수입인지 판매인 「지정제도」가 「계약제도」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수입증지 판매인 제도를 「계약제도」로 전환코자 하는 것이며, 또한 그 동안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.</p> <p>○ 주요 개정내용은 현행 12개 조문을 10개 조문으로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, 첫째, 서울특별시에 납부하는 수수료, 사용료 등은 수입증지로써 납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도 납부토록 규정하였습니다.(안 제3조)</p> <p>둘째, 수입증지 판매인 「지정제도」를 「계약제도」로 전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, 판매인의 요건, 의무, 계약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.(안 제4조)</p> <p>셋째, 판매인에게 지급하는 수입증지 판매수수료는 시장으로부터 구입한 수입증지의 100분의 3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.(안 제5조)</p> <p>□ 검토결과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.</p> <p>○ 동 개정조례안은 자치구제의 실시로 수입증지 납부대상 업무의 다양화와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, 그 동안 운영상 일부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코자 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때늦은 감은 있으나 매우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>○ 다만, 제9조(수입증지의 교환)에서 판매인은 수입증지가 오염·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수입증지의 교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자연인은 명문규정이 없으므로 자연인도 수입증지를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더 이상 소용이 없게 되어 수입증지의 교환 또는 환매를 청구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편의도모 차원에서 환매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</p> <p>○ 또한 수입증지를 출납, 보관하는 직원으로 임명된 자에 대하여는 손·망설의 경우 그에 상응하는 변상책임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는바,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.</p> <p>○ 끝으로 부칙에서 규정한 종전 조례에 의하</p>

16 (第116回-行政自治第4次)

<p>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시장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는 부칙규정은 문제가 있다 할 것이며, 경과조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간적 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서울특별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</p> <p>1. 제안경위</p> <p>가. 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 나. 의안번호 : 제401호 다. 제출일자 : 1999년 10월 5일 라. 회부일자 : 1999년 10월 9일</p> <p>2. 제안이유</p> <p>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,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·정비 코자 하는 것임.</p> <p>3. 주요골자</p> <p>가. 공공시설을 법인·개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수탁자가 당해 시설을 수익 목적으로 직접 또는 전대 사용하는 때 사용료를 부과토록 함.(안 제5조)</p> <p>나.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일부 폐지 또는 심의를 일부 생략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7조, 제11조).</p> <p>○ 폐지 : 대부료, 사용료 및 임차료의 적정 여부, 관리계획 적정여부 등</p> <p>○ 생략할 수 있는 경우 -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·처분 -행정재산의 용도변경이나 용도폐지시 특별시·광역시 지역은 330제곱미터 이하, 일반 시 지역은 660제곱미터이하의 토지 등의 경우</p> <p>다.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의 매각대금 및 대부료 감면대상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를 확대(안 제20조, 제23조의3, 제39조의2)</p> <p>○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⇒ 인정하는 공유재산</p> <p>○ 제조업인 사업 또는 공장건설사업 ⇒ 사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공장용지 내의 재산 ⇒ 사업장 내의 재산 라.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공공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철거주민 및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에게 공유재산을 매각시 분할납부에 따른 이자를 인하(안 제22조) ○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8% ⇒ 10년 이내의 기간으로 연 5% 마. 주택재개발구역 내 토지를 분납매각 후 당초 계약체결자로부터 매매계약서상의 모든 권리·의무를 승계한 자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당초 계약자가 적용받던 매각 대금의 분할납부 및 이자를 적용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2조의2) 바.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대부할 경우 대부료를 사전에 징수토록 하고, 대부료 산정 방식을 현실에 맞게 개선(안 제23조제2항) ○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 중 저렴한 가격 ⇒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사. 주거용건물이 있는 공유재산의 대부료 산정에 있어, 영세서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경우 대부료율을 최저요율로 완화(안 제23조제6항) ○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⇒ 1000분의 10 아.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최저 사용요율(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) 적용대상 범위를 확대(안 제23조제9항) ○ 벤처기업 집적시설 설치자 등 ⇒ 창업자 또는 개인, 단체, 법인, 기관 포함 자. 우리 시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법인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3조제11항) 차.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을 공개입찰하였으나 사용희망자가 없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에는 공유재산의 대부·사용촉진을 위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산출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20퍼센트 범위 내에
--	--